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 편의를 위해 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,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시설물 미사용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10일에서 30일로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13제2항 본문 중 “「전자정부법」 제21조제1항”을 “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(「건축법」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)을 첨부하여”를 “신청서를”로 하고,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(「건축법」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)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30일”로 한다.

별지 제1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 제5조(부담금의 경감)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<u>10일</u>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	---. <u>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,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(「건축법」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)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제5조(부담금의 경감) ① ----- ----- ----- ---- <u>30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--	--

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				처리기간	
				즉 시	
신청인	성 명		생년월일		
	주 소				
부과대상 시설물	시 설 명		납부통지서 코드번호		
	소 재 지				
소유권 이전 내용					
전 소유자 성 명	생년월일	주 소(연락처)		양도일	확 인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」 제2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(시설물 취득자) (서명 또는 인)					
관 할 시 장 귀하					
담당자 확인사항	건물등기부 등본 (소유권 이전정보)				수수료 없 음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					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					
※ 유의사항 1. 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일 현재(매년 7월 31일)의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분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. 2. 양도일은 건물등기부 등본상의 양도일과 일치하여야 합니다.					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 쪽)

